

# 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 1. 27.(목)
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2011년 1월 24일

-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고규창 정책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“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” 등 8개 조례의 인용조문, 조직명칭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정비
  - “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1조 중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3항 →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
  - “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 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  - “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” 제1조 중 「도로법」 제64조 및 「도로법」 제67조 → 「도로법」 제76조제2항
  - “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” 제1조 중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 →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
  - “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” 제7조제3항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 →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 동조례 제8조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 →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
  - “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” 제10조제2항 중 “보건위생과장” → “보건정책과장”, “보건약담당” → “건강증진담당사무관”
  - “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” 제15조제4항 중 “지역개발과장” → “균형개발과장”
  - “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제3조 제2항제1호의 가목 “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” → “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”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윤양한)

- 현행 조례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 일제 조례 정비와 관련한 인용 조문의 변경과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, 그리고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4건과 내부적 여건 변화에 의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법제담당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를 최소화 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#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**제1조(「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3항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**제2조(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”를 “「지방자치 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복지정책과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**제3조(「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노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으로 한 다.

제8조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으로 한다.

**제4조(「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보건위생과장”을 “보건정책과장”으로, “보건의약담당”을 “건강 증진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**제5조(「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

**제6조(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 지역  
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5조제4항 중 “지역개발과장”을 “균형개발과장”으로 한다.

**제7조(「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 도로복구  
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 제64조 및 법 제67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76조제2항”으  
로 한다.

**제8조(「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** 충청북도지방  
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”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

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 133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~ 제6조 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~ 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



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~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, 부위원장은 <u>노인장애인복지과장</u>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 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(생략)</p> <p>제8조(시설관리)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책임자는 <u>노인장애인복지과장</u>이 된다. 단,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~② <u>현행과 같음</u>                    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, 부위원장은 <u>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</u>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 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시설관리)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책임자는 <u>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</u>이 된다. 단,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</p>

##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 ② 간사는 <u>보건위생과장</u> 으로 하고 서기는 <u>보건 의약담당</u> 으로 한다.  ③ (생략)	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간사는 <u>보건정책과장</u> 으로 하고 서기는 <u>건강 증진담당사무관</u> 으로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
##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&lt;개정 2010. 8. 11&gt;</p> <p>1. 당연직</p> <p>가.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 <p>나.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&lt;개정 2010. 8. 11&gt;</p> <p>1. 당연직</p> <p>가.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 <p>나.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회의) ① ~③ (생략)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, 간사는 <u>지역개발과장</u> 이 된다. ⑤ (생략)	제15조(회의) ① ~③ (현행과 같음)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, 간사는 <u>균형개발과장</u> 이 된다. ⑤ (현행과 같음)

##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 (이하 "지 사"라 한다)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「도 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원 인 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 (이하 "지 사"라 한다)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「도 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원 인자부담금 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의 부과 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

##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